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차등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동일하게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6조제3호)

국가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나. 기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용어의 개정사항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기 타 :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139(2011.1.18)호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준) ① ----- ----- ----- 다만, <u>본적</u>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 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 ----- ----- ----- <u>등록기준지</u> ----- ----- -----.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제증명등 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u>각호의 어느 하나</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u>「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5·18민주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u>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 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3. ----- ----- ----- ----- ----- <u>「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u> ----, <u>「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u>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